#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법

## 1997년 4월 24일 법 제 396-I호로 승인

##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

- 법 제485-I호, 법 제621-I호에 의하여 개정
- 법 제681-I dtd. 29.08.98호
- 법 제729-I dtd. 25.12.98호
- 법 제722-I dtd. 15.04.99호
- 법 제832-I dtd. 20.08.99호
- 법 제82-II dtd. 26.05.2000호 제XXIV호
- 칙령 제UP-2613 dtd 06.06.2000호 별지 3호
- 칙령 제UP-2613 dtd 06.06.2000호 별지 4호
- 법 제175-II dtd 15.12.2000호 제20호
- 법 제220-II dtd 12.05.2001호 제XII절
- 법 제271-dtd 30.08.2001호 제VI절
- 법 제 320-ii dtd 07.12.2001호 제IX절
- 법 제dtd 05.04.2002호 제IV절
- 법 제405-II dtd 30.08.2002호 제IV절
- 법 제447 II on 13.12.2002호

#### (일부 조항)

#### 제17조 총소득의 구조

총소득은 상품, 작업, 서비스 및 기타 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이 수령한 금전 및 기타 지급수단 (또는 수령할 금전) 및 호의로 받은 금전을 포함한다.

- 이 경우 소득은 다음을 포함한다:
  - 1) 상품(작업 또는 서비스)의 판매로 인한 소득;

- 2) 자본 자산, 비물질 자산, 증권, 인적 또는 창조적 작업, 자료 및 기타 자산의 판매로 인한 소득;
- 3) 이자소득;
- 4) 배당;
- 5) 무상으로 수령한 재물;
- 6) 재물의 임차(임대)로 인한 소득;
- 7) 로열티;
- 8) 호의적 재정지원 (국가예산의 보조금은 제외);
- 9) 채권자 및 예탁자의 연체금 면제로 인한 소득 (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때);
- 10) 경비, 손실 또는 부실채권을 상환받음으로 인한 소득;
- 11) 통화계정의 환차익;
- 12) 초과소득;
- 13) 기타소득.

#### 제19조 총소득공제

다음의 금액은 과세 대상 총소득 (수익) 결정시 공제한다:

- 부가가치세, 소비세, 재산세, 토지세, 천연자원사용에 부과되는 세금, 환경세, 수자원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, 관세;
- 은행 및 기타 금융/신용기관의 단기신용을 사용하고 지불한 이자금액, (대월 및 이연대출에 발생된 이자는 제외);
- 임금 및 급여 지급과 관련된 경비 (은행, 보험시설, 비디오관람시설, 극장, 비디오 및 오디오 레코딩 센터, 경매, 카지노, 도박기계, 비정부기관의 복권 및 공공 콘서트 및 엔터테인먼트 제외);
- 확립된 절차에 따라 지급된 차임;
- 차임;
- 자본 자산의 보수와 관련된 경비;
- 별도의 법적 · 물리적실체가 제공한 물적 경비 및 서비스 비용;
- 현행 법률에 따라 임금에 추가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액
- 상품 (서비스) 인증 절차에 대한 보수의 지불과 관련된 경비;
-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여비관련 경비;

- 확립된 규범에 따라 부담한 대표관련 경비;
- 확립된 규범에 따라 지출한 광고 관련된 경비;
- 확립된 규범에 따라 지출한 훈련 등과 관련된 경비;
- 납세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다음 시설의 유지와 관련된 경비: 재원은 지방당국이 정한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공중보건시설, 노인 및 환자보호시설, 미취학아동 교육기관 및 하계 캠프, 문화체육시설, 공공교육기관, 주택; 납세자가 지분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상기 시설의 유지관련 경비액;
- 임대자산의 매수를 위하여 얻은 신용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수수료; (RU # 447 II 13.12.2002 에 따라 본 항 삽입);
-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에 포함되는 임대인의 소득; (RU # 447 II 13.12.2002 에 따라 본 항 삽입);
- 기타 현행 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금액.

위의 경비 및 금액과 별도로, 다음의 경비 및 금액은 총소득에서 공제한다;

- 1) 은행과 관련하여:
- 신용재원의 사용을 위하여 부담한 금액, 운영자금, 자금 등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경비;
- 물리적 실체 등 고객의 계좌에 발생되어 지급된 이자;
- 대손상각된 미회수 대출액;
- 2) 보험회사와 관련하여:
- 재보험 계약에 의하여 지불된 금액;
- 보험 및 재보험 계약에 의하여 지불된 금액으로서과세대상 연도 말까지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;
- 보험 및 재보험 서약에 의하여 계산 및 지불된 금액;
- 한도기한 내의 서약 등 전년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;
- 피보험 사고가 발생되었으나, 손실액이 결정되지 않은 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액;
- 보험회사가 피보험 사고를 예방 및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(예방적 조치)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;
- 보험회사가 수권자본의 25% 범위 내에서 수익의 20%를 유보한 준비금.

총소득에서 공제할 경비, 급여, 비용 및 공제액을 정하는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정한다.

발생된 경비가 여러 개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,1회에 한하여 총소득에서 공제된다.

자본자산, 비유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경비 및 기타 자본경비는 상각에 의하여 공제한다.

### 제30조 소득원천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소득(수익)세율

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소득원천으로부터 비거주자가 영구시설과 관련 없이 수령하는 소득 (수익)은 다음 세율에 따라 원천과세하고, 추가로 공제되지 않는다.

\_\_\_\_\_\_

¦배당 및 이자 ¦15 %¦

\_\_\_\_\_

¦고 위험 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¦10%¦

\_\_\_\_\_

└통신 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과 외국의 국제운송에 관한 운송 서비스 (운임 소득) └ └

16%1

¦로열티, 임차 (임대) 소득, 관리서비스, 전문가 자문 등으로 인한 소득 및 기타 수익 | 20% |

¦이미 소득 (수익) 과세의 대상이 된 수익은 제외 ¦¦

#### 제38조 고정자산의 리스

상각가능한 고정자산의 임차는 리스(금융임차)로 본다 - 당사자 일방(임대인)이 상대방 (임차인)의 지시에 의하여 제3자(공급자)로부터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재산 (임차자산)을 매수하여 임대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 및 사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동안. 리스계약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:

- 임차인이 리스계약 만료시에 고정자산의 소유권을 인수할 것;
- 리스기간이 고정자산의 경제적 수명의 80%를 초과할 것,
- 임차인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 시장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당해 고정자산을 매수할 권리를 가질 것;
- 임대된 고정자산의 잔존가치가 임대 개시시의 가치보다 20% 이하일 것;

• 리스계약 기간동의 리스료가 임대자산가격의 90%를 초과할 것.

### 제71조 부가가치세 면제

다음의 상품, 작업, 서비스 및 영업에는 VAT를 붙이지 않는다:

- 1) 보험 및 재보험 거래 (중개기관 및 보험 대리인이 수행하는 관련 서비스 포함);
- 2) 대부 및 대출금 이체;
- 3) 예금, 당좌계정, 대금지급, 이전, 수표 및 기타 증권에 관한 거래;
- 4) 적법한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는 외국통화 및 현금의 유통과 관련된 거래 (다만 화폐수집용 희귀채권은 제외);
- 5) 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거래 (발행 및 보관과 관련된 영업은 제외);
- 6) 공식적 요금이 붙는 일정한 활동 및 특별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임무;
- 7) 미취학아동 교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환자/노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;
- 8) 장례식장 및 묘지의 제례 서비스;
- 9) 지적재산의 사용권 취득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허세, 등록수수료 및 라이센스 관련 대금;
- 10) 보철장치, 악정형장치 생산 및 장애인 용구 생산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한 제품 및 병원의 형태로 의료 및 산업 워크샵이 제조한 제품;

제11호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제271-II dtd 30.08.2001호 제IV절 제5호에 따른 문장으로 보충된다.

- 11) 관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과세 할당량에 의하여 물리적 실체가 수입한 상품; 조세특권은 물리적 실체가 상업활등을 위하여 수입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12) 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;
- 13) 우표, 엽서 및 봉투 판매 (수집용은 제외);
- 14) 우체국이 제공하는 연금 및 복지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;
- 15)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기술과학위원회의 과학기술프로그램에서 수행된 국가계약에 의한 과학적 연구 및 혁신작업;
- 16) 지방 운송수단 서비스 (택시 및 노선 택시는 제외), 일반적 용도의 지방 철도 및 도로운송 관련 서비스 (택시 및 노선 택시는 제외);

- 17) 인민에게 제공되는 주택 및 공동체 서비스, 유지보수 서비스;
- 18) 교육과 관련된 공공교육분야의 서비스 및 고등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부과한수업료;
- 19) 보관과 관련된 관할 국가기관에게 판매한 귀금속의 판매 거래액;
- 20) 종교 시설 및 단체의 일정한 의식 및 제례와 관련된 서비스;
- 21) 병원, 요양소, 보건 시설, 관광 및 여행 사무소, 스포츠센터(주된 활동인 경우), 아동보호시설 및 캠프가 제공한 서비스;
- 22) 민영화된 국유재산의 비용;
- 23) 기상 및 고층기상 작업;
- 24) 지질 및 지형 작업;
- 25) 일반적 용도의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작업성과로 얻은 수익;
- 26) 출판사, 편집사무소, 인쇄소, 방송회사 및 국가정보기관이 주된 활동으로서 제작한 제품 및 제공 서비스;
- 27) 속기 서비스;
- 28) 적절하며 권한 있는 국가시설의 환경자문서비스;
- 29) 과학기술적 처리, 복원, 제본 및 보관과 관련된 서비스 및 사무개선 서비스;
- 30) 공용어 교육 및 공용어 기록유지와 관련된 서비스;
- 31)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어 자가건축과 관련하여 개인 및 시설에게 판매된 자재;
- 32) 계약으로 이행한 건설량 및 특별조립작업, 보수 및 건설시설, 민간 주택건설에 관여하는 특별조립 전문가의 건설량 및 특별조립작업;
- 33) Uzzhilsberbank가 서명한 물리적·법적 실체를 위한 주택건설을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이행한 주택건설작업량;
- 34)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수출되거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통과하는 상품의 운송, 선적, 하적, 재선적 서비스;

제35호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제320-ii dtd 07.12.2001호 (종전판) 제IX절 제7호에 따라 기술한다.

35) 장애인단체, Nuroniy 기금 및 우즈베키스탄 Chernobyltsi 협회가 소유하고 직원의 50% 이상이 장애인인 법인이 생산 및 판매한 상품(수입 및 소비세가 붙는 상품은 제외), 작업 및 서비스 (상업, 중개, 공급, 판매 및 조달작업 및 서비스는 제외);

36) 자연재해, 무장충돌 및 사고 피해자를 원조하기 위해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재산 및 인도적 지원의 형태로 수입되는 상품.

법 제729-I dtd. 25.12.98호에 따라 제2편은 폐지한다.

법 제729-I dtd. 25.12.98호에 따라 제37호는 폐지한다. (1997년 12월 26일 법에 의해 도입)

- 38)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비거주자 등 법적 실체가 국제 및 외국정부의 재정/경제단체가 제공한 대출 및 급여에 의하여 수입한 장비, 자재 (작업 및 서비스). (제621-I of 01.05.98호에 의해 도입)
- 39) 내무부 산하기관의 안보서비스. (법 제729-I dtd. 25.12.98호에 의해 도입)
- 40) 사립 미취학아동 교육시설(등록일로부터 3년간). 다만, 관련 자금은 물적 및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, 장비, 재고, 교육자료, 어린이용 장난감과 책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; (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82-II dtd 26.05.2000호 제 XXIV절 제4호에 따라 도입)
- 41) 예산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수입된 장비, 상품 (작업 및 서비스); (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82-II dtd 26.05.2000호 제 XXIV절 제4호에 따라 도입)

법 제175-II dtd 15.12.2000호 제20호 제2목에 의하여 도입

42) 수입 의약품 및 의료제품.

제43호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271-II dtd 30.08.2001호 제VI절 제5호에 따라 보충

- 43) 법인 여행 조정 활동 면허소지자
- 44) portrait 생산, 학용품, 의약품 및 의료물품의 도매; (이 호는 법 제447 on 13.12.2002호에 따라 도입);

- 45) 재산의 임차를 위한 임차료 (이 호는 법 제447 on 13.12.2002호에 따라 도입);
- 46) 임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수입된 기술장비. 다만 승인된 은행의 배서가 있어야한다. (이 호는 법 제447 on 13.12.2002호에 따라 도입)

#### 제92조 법인의 재산세 관련 특례

법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액 계산시, 과세기준에서 다음의 비용을 공제한다:

- 생활공간 및 납세자가 부담하는 사회문화용 건물;
- 환경, 위생 및 화재예방과 관련된 구성물 및 건물;
- 농산물의 생산, 저장 및 선별, 어류의 양식 및 가공에 사용되는 건물 등;
- 오일 및 가스 파이프라인, 통신라인 (고속도로 포함), 통신 네트워크 및 전기전송선, 기타 위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구성물;
- 통신위성;
-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생산 자본 자산;
- 지방 여객운송 (택시 및 노선 택시는 제외) 및 일반적 지방 여객운송을 위한 도로운송서비스 (택시 및 노선 택시는 제외);
- 도로 유지보수에 관여하는 기업 및 시설에 속하는 운송수단;
- 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인력훈련 또는 군사훈련에 사용되는 운송수단;
- 납세자가 부담하고 사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민방위와 관련된 건물 등.

(법 제729-Idtd. 25.12.98호에 의하여 도입)

- 신용상환기간 동안 외국의 신용으로 구매한 장비; 당해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(법 제832-I dtd 20.08.99호에 의하여 도입)
- 임대계약기간 동안 임대로 수령한 재산 (법 제447호에 의하여 도입)

법인이 소유하는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:

- 비 상업 시설이 소유하는 재산 (그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은 제외);
- 교육문화적 요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;
- 주택 및 공동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소유하는 재산;

- 농축산물의 선별 및 보관에 관여하거나 어류의 양식 및 가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이 소유하는 재산;

제6호는 법 제320-ii dtd 07.12.2001호 제IX절 제10호에 따라 제외되었음

- Samarkand, Bukhara, Khiva, Tashkent 지역에서 관광활동을 수행하는 신설기업에게 속하는 재산 (설립일로부터 최초 수익이 발생하는 날까지). 이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당해 법인이 세제혜택을 누리는 기간 중에 청산하는 경우, 재산세 전액을 부과한다;

제8호는 법 제320-ii dtd 07.12.2001호(구판) 제IX절 제10호에 따라 제외되었음

장애인단체, Nuroniy 기금 및 우즈베키스탄 Chernobyltsi 협회가 소유하고 직원의 50% 이상이 장애인인 공공협회가 소유하는 재산 (상업, 중개, 공급, 판매 및 조달활동에 관여하는 협회는 제외);

제10호는 법 제832-I dtd 20.08.99호에 따라 제외되었음.

- 신설기업에 속하는 재산 (등록일로부터 2년간). 재산세 관련 특권은 청산(구조조정)한 기업, 그 계열사 및 자회사의 생산능력 및 자본 자산에 기초하여 설립된 기업 및 다른 기업 하에 설립된 법인 (당해 기업으로부터 임대한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)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- 사립 미취학아동 교육시설 (등록일로부터 3년간). 다만, 당해 시설은 지원자금을 자료 및 기술적 기초를 강화하고, 장비, 재고, 교육적 자료, 어린이용 장난감 및 책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;(법 제82-II dtd 26.05.2000호 제XXIV절 제5호에 의해 도입)

지방당국은 그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자에게 그 밖의 재산세관련특권을 허여할 수 있다.